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880-5호 (심의일: 2023.03.27) [유효기간: 2023.03.27~ 2025.01.25]

「KB 국민연금安心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명 및 특징

■ 상 품 명: KB국민연금安心통장

■ 상품특징 : 국민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연금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 1계좌)	
신규금액	■ <mark>0원 계좌</mark> 로만 개설 가능	
상품유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저축예금)	
전환가능 여부	■ 다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 및 이 통장에서 다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전환 불가	
기본이율 (2023.03.27 기준, 세금공제 전)	■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된 저축예금 기본이율 적용	
	평균잔액 5천만원 미만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
	연 0.10%	연 0.10%
이자 지급시기	■ 예금이자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 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산 출근 거)	■ 예금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하는 기본이율로 계산	

수수료 면제 서비스	■ 면제대상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 납부자(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제외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 면제기준 - 전월 중 국민연금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면제 (단, 신규시에는 이체실적에 관계없이 신규일로부터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횟수: 제한없음	
거래제한	 입금제한: 국민연금 급여(건별 185만원 이하)만 입금 가능 입금가능급여: 국민연금 노령·장애(1~3급)·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 포함) 건별 185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전액 입금되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에 동 상품과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2개를 신고하는 경우 185만원까지 동 상품으로 수령하고,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로 수령 가능. 단, 일시금은 분할 수령 불가하며 185만원 이하 금액만 수령 가능) 이자원가를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 계좌간 자동이체 약정 시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출금계좌 등록은 가능)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의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 수급권 제한 불가: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기타 거래제한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 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방법	■ 신규: 은행창구 방문 ■ 해지: 은행창구 방문, 개인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	
계약해지방법	• 은행창구 방문, 개인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개인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을 통한 해지 시 해지잔액을 입금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질권설정	■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단,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	

■ 계좌에 **압류^{주1)}, 가압류^{주2)}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 1)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원금 및 주 2)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이자지급 제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및 주)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출연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예금자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5 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보호여부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수령계좌로 신고 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통지 시 연금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항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3.27 현재)